

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서울경제는 6월 13일 「“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”...예보, 예금자 보호 대상 포함 검토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진선영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	남창우 (02-2100-2903)
	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실	책임자	실 장	김동석 (02-758-0731)
		담당자	팀 장	염유동 (02-758-0732)